보건복지위원회
소 관

성북의 미래, 현장에서 답을 찾다!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 북 구
(문화체육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8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조례 중 관람료 면제 근거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(홈페이지 등) 운영 근거 마련

나.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(안 제9조)

다. 그 밖에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한부모가족

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기간 : 2021. 9. 30. ~ 10. 20.(20일)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
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4)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5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박물관 홍보·정보제공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

제9조제1항제2호 중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"을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"을 "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을 "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3의 적용을 받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"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"을 "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호(종전의 제11호) 중 "「한부모가정지원법」"을 "「한부모가족지원

법」”으로 한다.

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

제11조제4호 중 “제12조 제1항”을 “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한차례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제41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업무)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	제5조(업무)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박물관 홍보·정보제공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
6. (생 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9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9조(관람료의 면제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----------
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	3. --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-------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6.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6.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3의 적용을 받는 사람
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8. --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----------.
<신 설>	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
9.·10. (생 략)	10.·11. (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)
11. 「한부모가정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1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----
12. ~ 16. (생 략)	13. ~ 17. (현행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관람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	제11조(관람의 제한)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2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구청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	4. 제12조제1항 ---------- ----------
제1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16조(위원의 임기) ---------- ---------- 한 차례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4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41조(준용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관계 법령(발췌)

□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,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5. 9. 22.>

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신설 2013.6.21>

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(제16조제1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1. 고궁 및 능원	100분의 100
2. 국공립 공원	100분의 100
3. 독립기념관	100분의 100
4. 전쟁기념관	100분의 100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	100분의 100
6. 국공립 수목원	100분의 100
7.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분의 100
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50
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100분의 50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부분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문화체육과장 홍 지 현